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27일(목), 오후 4시 / 대회의실(9동 2층)
2. 소집통보 : 2021년 5월 17일(월)
3. 의원 참석 현황 : 의원정수 12명중 12명 참석
(참석자 : 현종구, 이창훈, 장관순, 김천구, 김경한, 박노승, 김용미, 염왕열, 최태영, 흥다혜, 서여정, 최재청)
4. 회의안건

- 1) 제8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2) 2021학년도 제2차 학칙 개정(안) 심의

5. 회의내용

[간 사] 제8대 대학평의원회 최초 회의로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 후에는 의장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 대학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상 의장 및 부의장은 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의장에 대한 선출을 위해 추천해 줄 것을 각 의원에게 요청하다.

[장관순 의원] 제7대 의장을 역임하신 현종구 의원을 추천하다.

[박노승 의원] 동의하며 재청하다.

[이창훈 의원] 최재청 의원을 추천하다.

[간 사] 더 이상 추천 의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재청 의원과 현종구 의원 중 의장을 선출해 줄 것을 말하고 찬반 거수를 한 결과 현종구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었음을 말하고 다음으로 부의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장관순 의원] 최재청 의원을 추천하다.

[이창훈 의원] 박노승 의원을 추천하다.

[최재청 의원] 이창훈 의원을 추천하다.

[의 장] 간사에게 추천된 의원들의 의사를 듣고 진행해 줄 것을 말하다.

[간 사] 추천된 의원에게 의사를 묻다.

[박노승 의원] 본인은 외부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거부하겠다고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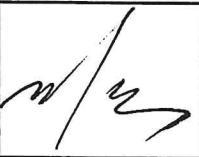
[최재청 의원] 본인은 집이 너무 멀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어 거부하다.

[이창훈 의원] 추천을 수락하다.

[간 사] 각 의원에게 이창훈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제8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현종구 의원으로 부의장은 이창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하고 의장에게 회의의 진행을 요청하다.

[의 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2021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금일 안건은 2021학년도 제2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라고 말하고 안건 세부내용에 대해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지원팀장] 2021학년도 제1차 학칙 개정(안)에 학칙 제8조는 실제 일부 개편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조정실이 신설되어 실 및 실장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평의원 현종구		평의원 박노승		평의원 김경한	
------------	---	------------	---	------------	---

라고 하고 학칙 제30조는 등록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이라고 하며, 학칙 제40조는 책임시수를 준수하지 않은 전임교원에 대한 대학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칙 제75조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는 학생도 등록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하고 설명을 마친다.

< 2021학년도 제2차 학칙 개정(안) >

학칙 제8조(조직)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② 단에는 단장, 각 처에는 처장, 팀에는 팀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단장,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단, 처 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① 좌동 ② 실에는 실장, 단에는 단장, 각 처에는 처장, 팀에는 팀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실장, 단장,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실, 단, 처 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좌동
학칙 제30조(수강신청)	
현행	개정(안)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총장이 공고한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① 등록을 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총장이 공고한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으로 처리한다.
학칙 제40조(교수시간)	
현행	개정(안)
① - ③ 생략 <u><신설></u>	① - ③ 좌동 ④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전임교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학칙 제75조(등록금의 반환)	
현행	개정(안)
① 1. - 6. 생략 <u><신설></u> ② 전 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① 1. - 6. 좌동 7.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② 전 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호의 경우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월할 수 있다.
부 칙	
현행	개정(안)
<u><신설></u>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의원 현종구		평의원 박노승		평의원 김경한	
------------	--	------------	--	------------	--

[의장] 주무부서의 설명이 끝난 후 각 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묻고 먼저 학칙 제8조의 개정(안)에 대해 질의가 있음을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학칙 제30조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

[최재청 의원] 대학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세부지침을 잘 마련하여 지침에 맞게 조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무부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

[교무지원팀장] 관련 근거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말하다.

[의장]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수강신청정기간까지라고 답변하다.

[의장] 해당 학생은 본인의 의사 없이 휴학으로 강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그렇다고 답변하다.

[의장] 그렇다면 학생이 휴학이나 복학에 따른 시기나 본인의 미동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어떠한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학생의 재적상태에 대해 우편이나, 메시지, 이메일 등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공지할 예정이며, 휴학으로 처리 된 후 복학대상자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나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학생에게 내용의 도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학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고 학업에 의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라면 복학시점에 복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라면 미복학 제적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하다.

[장관순 의원]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졸업학점의 1~2학점을 일부러 남겨두고 소속이 필요하여 고의로 등록만 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우리대학에서 발생한 학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듣지 못했으나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학위취득유예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차라리 정상적인 제도를 통해 좀 더 학생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박노승 의원] 현재 학칙 제30조의 개정(안)은 제3항을 신설하여 휴학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제1항을 '학생은 총장이 공고한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생은 휴학으로 처리한다.'로 개정하여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개진하다.

[최재청 의원] 박노승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법률개정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재차 동의를 표하다.

[의장] 박노승 의원의 의견에 각 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묻고 동의과 재청이 있은 후 주무부서에 박노승 의원의 문구대로 수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의견 주신대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의장] 학칙 제30조는 박노승 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을 파악한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학칙 제40조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하다.

평의원 현종구		평의원 박노승		평의원 김경한	
------------	--	------------	--	------------	--

[이창훈 의원] 주무부서의 발표내용대로 취지는 이해하나 별도로 정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정하는지 알 수 없어 심의가 어렵다고 말하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우리대학의 종합감사 지적에 대한 보완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관리지침에 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세부사항은 기준과 달리 9시간을 강의하지 못한 학기가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반드시 보충하여 두 학기(30주) 평균 9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해당 전임교원에 대해 대학은 교내 연구비지원, 논문게재 격려금 지원, 연구년 신청 등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이창훈 의원] 그렇다면 해당 내용은 우리대학의 전체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침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부서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사항은 그러한 절차로만 결정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지침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의장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하되 차후 회의에서 지침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것을 요청하다.

[의장] 지침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총장님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한다고 답변하다.

[의장] 그럼 지침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는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다.

[이창훈 의원] 추가적으로 전임교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침으로 정한다는 것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라리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하다.

[교무지원팀장]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에는 큰 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다.

[장관순 의원] 현재 주무부서를 통해 구두로 지침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는데 별도로 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심의를 통과시키려면 지침에 관한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전달받아 의원님들 간 논의하여 어느 정도 범위와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개진하다.

[이창훈 의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하고 대학도 외부 평가 등 사안이 급한 것으로 보여 상정된 안건은 그대로 수용하되 별도로 정한다는 별도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다.

[의장] 우리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심의할 안건과 자문할 안건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학칙 개정은 심의에 포함되나 다른 사항은 심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의견을 묻다.

[최재정 의원]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라면 그에 수반되는 사항도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일단 이창훈 의원님께서 학칙 제40조 제4항의 신설에 대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의 동의와 재정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한다고 의장에게 말하다.

[김경한 의원] 규정의 기술적인 측면 같은데 지침이 아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면 절차상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침보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지 묻다.

평의원 현종구		평의원 박노승		평의원 김경한	
------------	--	------------	--	------------	--

[교무지원팀장] 필요하다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지침개정을 위해 교무위원회 심의로 상정하였던 안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해 심의를 해주시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하다.

< 수업관리지침 제12조 개정(안) >

수업관리지침 제12조(전임교원의 책임시간)	
현행	개정(안)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초과강사료는 종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하되, 종장의 책임시수는 0시간으로 한다.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직을 수행하는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강사료는 종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하되, 종장의 책임시수는 0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당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임교원은 학년도(30주 이상 기준)의 주당 평균 책임시간이 9시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시간 미충족을 보완하기 위한 강의시간은 초과강사료 지급 산정 시간에서 제외하며, 해당 전임교원에 대해 대학은 교내연구비 지원, 논문 게재 격려금 지원,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각 의원]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다.

[교무지원팀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하다.

[최재청 의원] 그렇다면 지금 학칙 제40조 제4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제시된 수업 관리지침의 개정하는 것 등 두 가지에 대해 금일 심의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제시된 지침의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그렇다고 답변하다.

[김천구 의원] 제4항 신설내용을 '별도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수업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른다'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어차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다.

[최재청 의원] 별도로 정하는 것 보다는 어느 지침이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의견 주신대로 제4항의 '별도로 정한다'를 '수업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다.

[이창훈 의원] 내용 중 '연구년 신청 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등이라고 함은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다.

[교무지원팀장]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한 것으로 의견 주시면 삭제하겠다고 답변하다.

[박노승 의원] 공무원 개념에서 볼 때 신청이나 이런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등이라는 문구는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이창훈 의원에게 삭제할지 다시 한 번 묻다.

[이창훈 의원] 박노승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삭제하지 않을 것을 말하다.

[교무지원팀장] 삭제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답변하다.

평의원 현종구		평의원 박노승		평의원 김경한	
------------	--	------------	--	------------	--

[의장] 학칙 제40조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마지막 학칙 제75조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말했으나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금일 회의를 정리 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8조와 제75조의 내용은 상정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 제40조와 수업 관리지침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며 제30조의 경우에는 제3항을 신설하지 않고 제1항을 '학생은 총장이 공고한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학생은 휴학으로 처리한다.'로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하고 각 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구하다.

[각 의원] 각 의원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앞서 언급한 대로 심의·의결함을 선포하고, 간서명은 본인과 박노승 의원, 김경한 의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다.(17시 20분 산회)

2021년 5월 27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 : 현 종 구

평의원 : 김 용 미

평의원 : 박 노 승

평의원 : 염 왕 열

평의원 : 최 태 영

평의원 : 최 재 청

평의원 : 장 관 순

평의원 : 이 창 훈

평의원 : 김 천 구

평의원 : 김 경 한

평의원 : 홍 다 혜

평의원 : 서 여 정